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강서구 오정로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52
----------	------

2024년 3월 5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나. 제 출 일 : 2024년 2월 5일
다.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라. 상 정 일 :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가. 입안사유

- 대상지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방화대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오정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나. 안건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세부시설조성계획(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	가	30.5	주간선 도로	557	오쇠동 147-7	오쇠동 180-5	일반 도로	-	-	- 하수도 중복결정 (841m²)
당초	중로	2	338	15	집산 도로	655	외발산동 288-8	공항동 401-24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1991.7.22.)	
변경	대로	1	338	36.5	주간선 도로	968	외발산동 423-12	공항동 445-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1991.7.22.)	- 철도 중복결정 (909m²) - 공항 중복결정 (48,269.6m²)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대로 2-가		• 신설 - 폭원 : 30.5m - 연장 : 557m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오정로 확장공사로 인한 시설 변경				
변경	중로 2-338		대로 1-338		• 선형 변경 • 폭원 변경 - 당초 : 15m - 변경 : 36.5m • 연장 변경 - 당초 : 655m - 변경 : 968m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오정로 확장공사로 인한 시설 변경				

다.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기 타 : 개발제한구역, 공항(김포공항), 철도(대곡소사선), 하수도, 도로

라. 주민 의견 청취 사항

- 열 략 기 간 : 2023. 8. 31. ~ 9. 14.(14일간)
- 계 재 신 문 : 서울경제, 서울신문
- 열 략 장 소 : 강서구 도시계획과
- 접 수 의 견 : 2건

제출인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안○○ (오쇠동 169-3)	○ 본인소유토지(오쇠동 169-3)와 오정로를연결 할 수 있는 고리울천 상 교량 설치 및 농로가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도로계획 변경 요청	○ 고리울천까지의 도로 확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본 도로 사용 형태 및 접속 여부 등 현황을 고려하여 부체도로를 설계하였음	미반영
권○○ 권○○ 오○○ (신영가설)	○ 오쇠동 175-4번지 공동명의 분할 사용 토지의 편입 배제 요청 ※ 지적: 3,213㎡, 편입면적: 1,070㎡	○ 도로를 확장하며 주변 토지와 단차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진출입을 위한 부체도로를 설계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시 편입면적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겠음	미반영

마.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 일 시 : 2023. 09. 11.
- 결 과 : 원안채택

바.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 2023. 11. 30.
- 결 과 : 원안동의

사.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강서구의회	○ 외발산사거리-메이필드사거리간 교통성 평가의 서비스 등급이 FF이므로,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오정로상행단보도를 '스테거드행단보도' 형식으로 변경하고 신호운영계획을 보완, 교차로 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를 개선하였음	반영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도로구역결정(변경) 과 관련하여 강서 IC 교차로 일대 도로 시설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21.2.) 시 정합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 이후 고속도로의 강서IC 접속 계획이 변경(방화대로→오정로)되어 해당 교차로에 대한 정합성 검토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시행자 소관사항이나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부분 반영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	○ 도로 일부 구역이 '김포공항 대중골프장'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조건으로 조성된 대체녹지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대체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행정사항을 시설 결정 전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관리계획규정 제29조, 제34조)	○ 해당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광역도로)에 해당하나, ○ 대체녹지 관련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와 별도 협의 진행 중으로 대체녹지확보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사전 절차를 협의하겠음	부분 반영
한국공항공사	○ LH공사에서 대체녹지조성*을 완료할 경우, 오정로 확장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제척 27,500m ²) 가능 * 대체부지 인정조건으로 LH에서 (주)구성 환경 폐기물 처리 후 대체녹지조성	○ 폐기물 처리 관련 기 협의중인 조건 사항에 대해 협의 완료 후 관련 절차 이행하겠음	부분 반영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강서IC RAMP 등 오정로확장사업과연계가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및 서서울고속도로(주)와 사전 협의 필요	○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강서IC RAMP 등 오정로확장사업과연계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및 서서울고속도로(주)와 협의하겠음	반영
	○ 광명~서울 고속도로 도로계획(강서IC) 반영 필요	○ 강서IC 변경 전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21.2)으로 [오정로 확장사업(4차선→8차선)]이 선확정되었으며, 강서IC 계획이 최대한 반영토록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아. 기타

○ 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방안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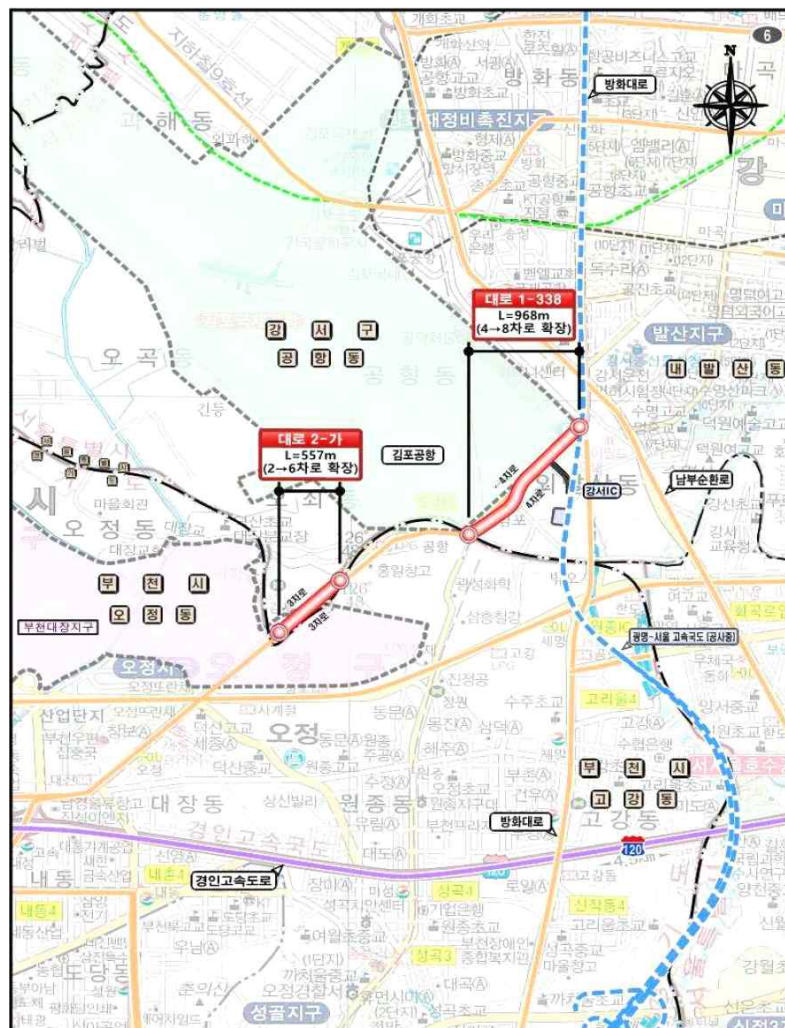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구 분		계	2024	2025	2026	2027년 이후	비고
총사업비	합 계	516	51	181	181	103	
	공사비	142	14	50	50	28	
	보상비	335	34	117	117	67	
	부대비	14	1	5	5	3	
	예비비	25	2	9	9	5	

○ 주요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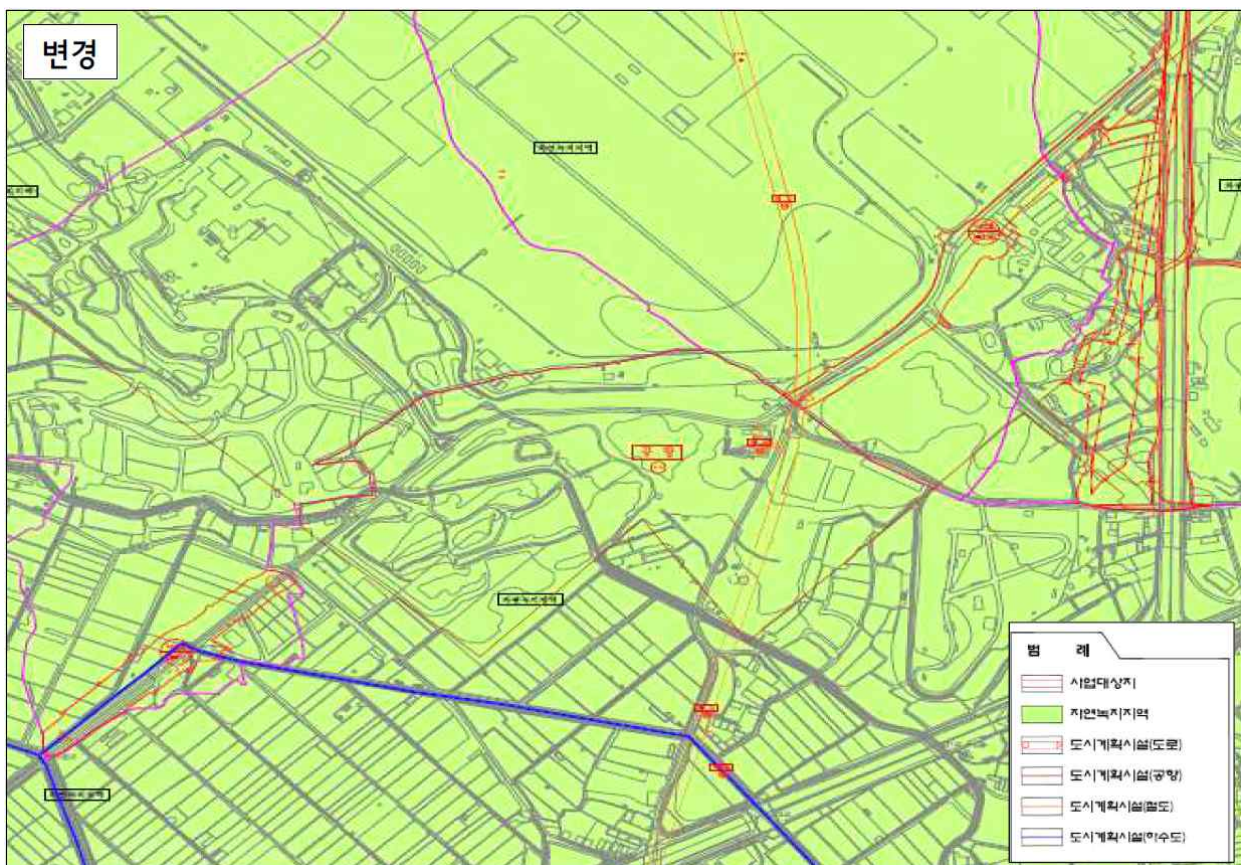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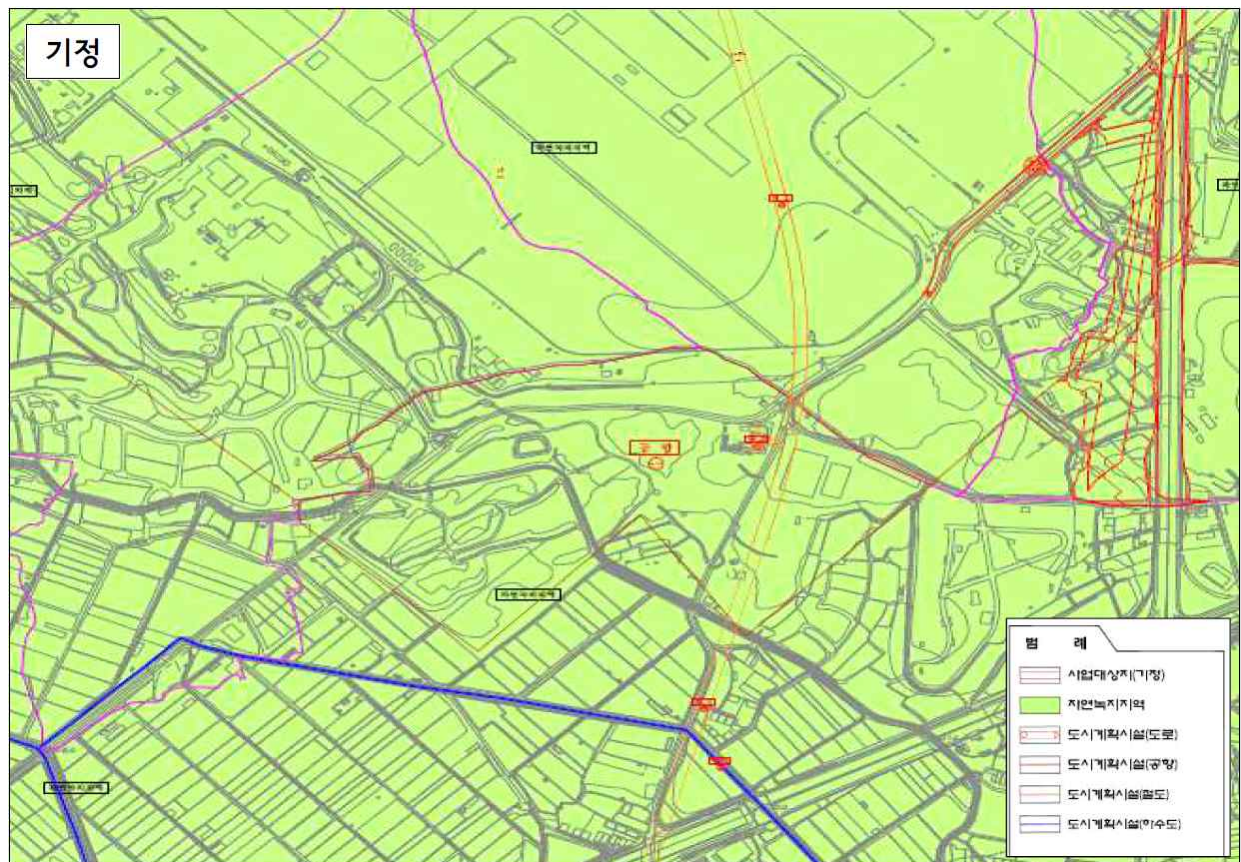
- '20.05.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
- '21.02. 부천대장·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21.11.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23.08.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
- '23.0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요청(LH공사 → 강서구)
- '23.08.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3.09. 구의회 의견청취(원안채택)
- '23.11.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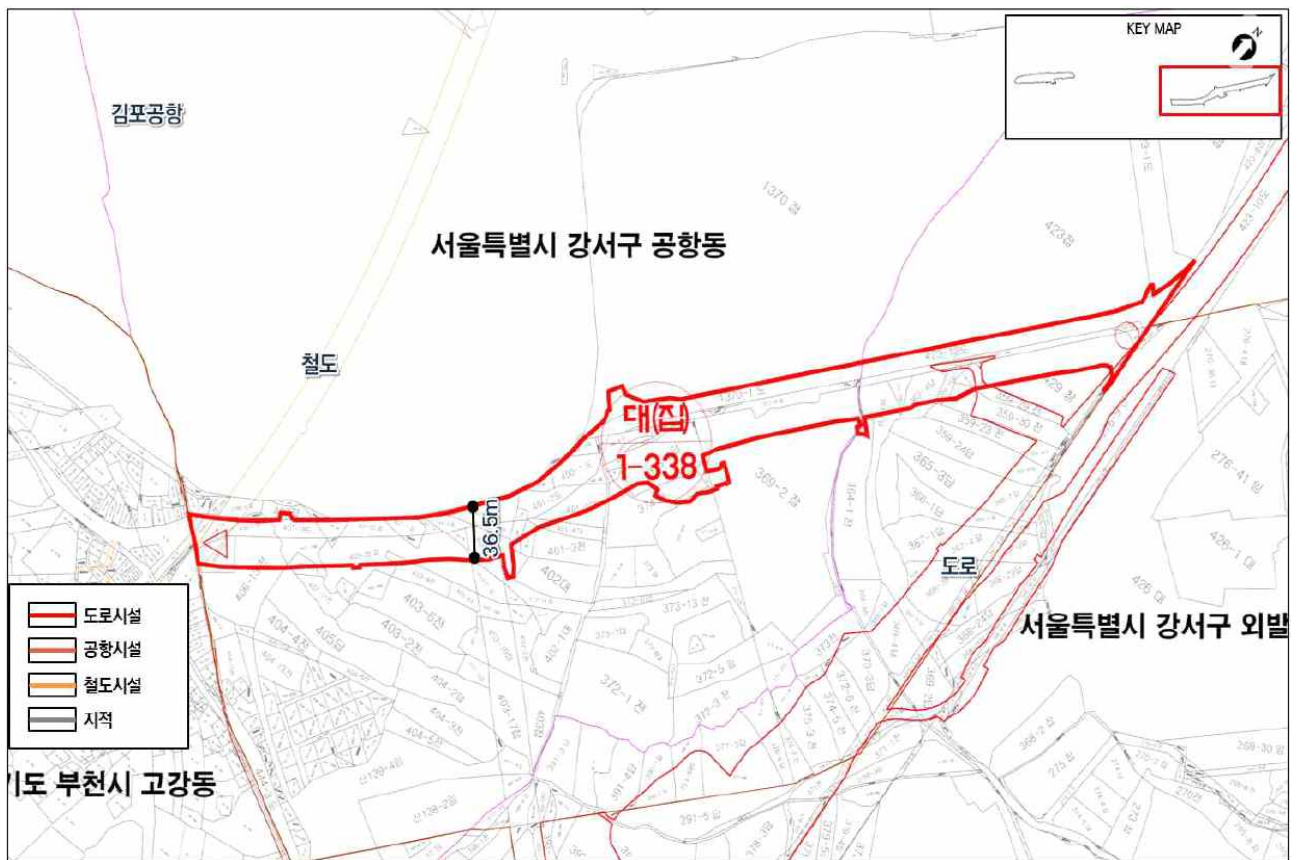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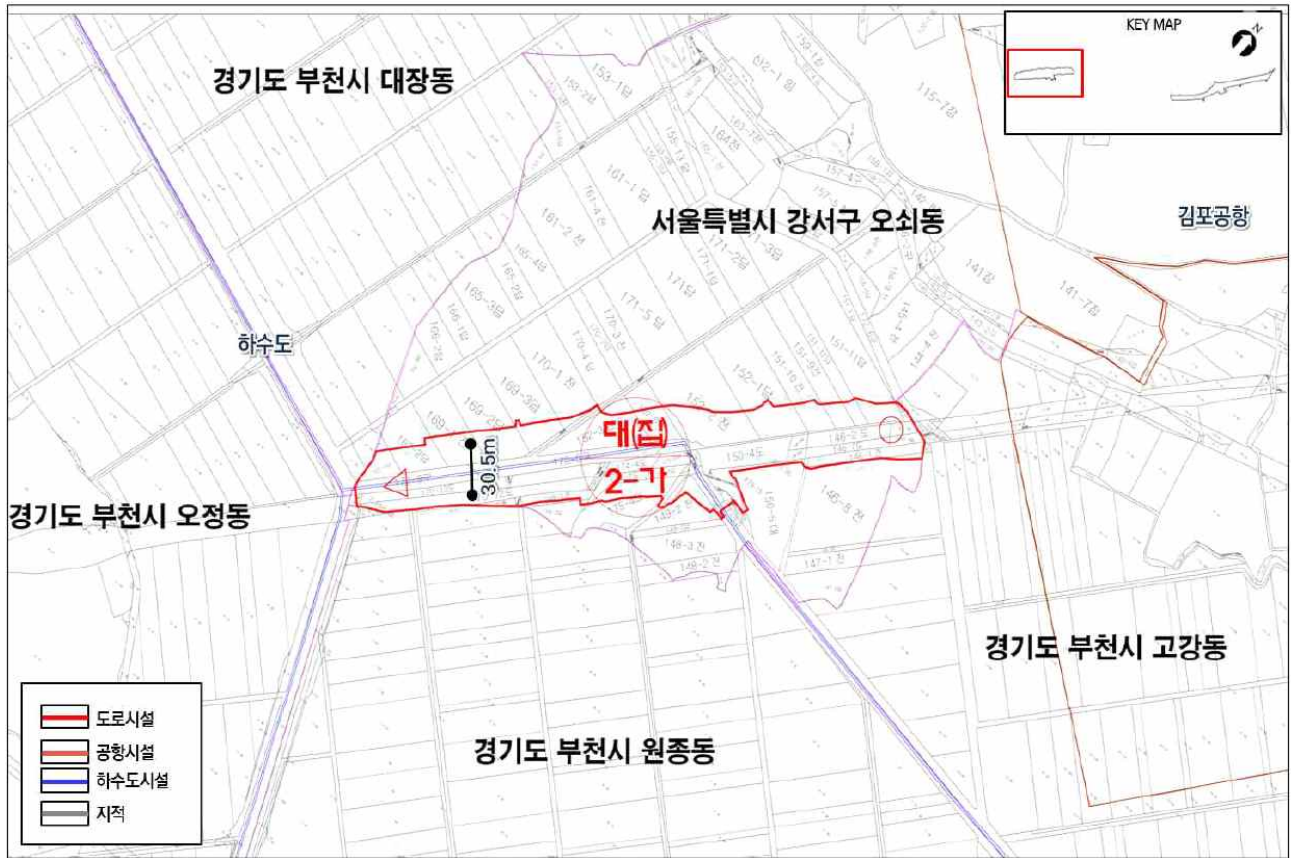
자. 위치도





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하, '의견청취안)」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방화대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립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근거하여 '강서구 오정로' 확장공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 '강서구 오정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24.2.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4.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임

< '강서구 오정로' 확장사업 위치 >



< '강서구 오정로' 확장사업 개요 >

구분	등급	구	모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대로	2	가	30.5m	주간선 도로	557	오쇠동 147-7	오쇠동 180-5	일반 도로	-	-	- 하수도 중복결정 (841㎡)
당초	중로	2	338	15m	집산 도로	655	외발산동 288-8	공항동 401-24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1991.7.22.)	-
변경	대로	1	338	36.5m	주간선 도로	968	외발산동 423-12	공항동 445-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1991.7.22.)	- 철도 중복결정 (909㎡) - 공항 중복결정 (48,269.6㎡)

나. 검토 내용

“제출 경위”

- 이번 의견청취안 사업 대상지인 ‘강서구 오정로’는 서울시 구간 1.53km에 해당하는 확장공사 사업으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2027년 대비 교통량이 평균 약 7,000대 증가할 것으로 예측¹⁾됨

〈 ‘강서구 오정로’ 연도별 교통량 예측 〉

구 분		승용차	버스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					합계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종	11종	12종	
대로2-가 (2→6차로)	2027년	27,456	886	3,027	483	287	227	7	0	0	15	0	6	32,394
	2030년	33,810	1,091	3,727	594	353	280	9	0	0	18	0	7	39,889
	2036년	32,619	1,052	3,596	573	341	270	9	0	0	17	0	7	38,484
	2046년	30,412	981	3,353	535	318	252	8	0	0	16	0	6	35,881
대로1-338 (4→8차로)	2027년	37,952	1,225	4,184	667	396	314	10	0	0	20	0	8	44,776
	2030년	43,604	1,407	4,807	767	456	361	12	0	0	23	0	9	51,446
	2036년	42,004	1,355	4,630	738	439	347	11	0	0	22	0	9	49,555
	2046년	38,823	1,253	4,280	682	406	321	10	0	0	21	0	8	45,804

※ 교통량 증가 예측 결과 : - 대로2-가 : '27년 32,394대 '30년 39,889대 (7,495대 증가)
 - 대로1-338 : '27년 44,776대 '30년 51,446대 (6,670대 증가)

- 이번 강서구 오정로 확장공사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도시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도로 노선의 교통수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1)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기간은 2020.5월~2029.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교통량 증가 예측 결과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의 준공 시기 전후를 비교한 것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③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 환승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강서구 오정로’ 확장공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계획법」 제28조 제6항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의견청취안을 실시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지 현황 및 공사개요”

- ‘강서구 오정로’ 확장공사 사업은 강서구 오쇠동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경계부터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교차로까지²⁾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16억 원(사업시행자 LH 100%), 연장 1.53km, 폭원 30.5~36.5m (6~8차로)로 계획³⁾되었음
- 오정로 노선 구간의 경사 평균은 0.67°로 완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생태자연 현황은 생태자연도상 대부분 3등급지역으로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총 157필지로 전 18.4%, 답 15.95%, 임야 1.71%, 도로 25.57%,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167-1 외 374필지(전체면적 132,272.6㎡)

구분	합계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				비 고
		고강동	오쇠동	공향동	외발산동	계	
편입면적	132,272.6	47,433.0	36,570.0	34,604.4	13,665.2	84,839.6	

※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강서구 오쇠동 142-6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포함하여 결정함

3) 총연장 2.56km (서울시 1.53km, 경기도 1.03km)
총사업비 860억 원 (서울시 516억 원, 경기도 344억 원)

기타 38.37%로 확인되고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은 총 157필지로 사유지 50필지 39.11%, 국유지 93필지 47.31%, 공유지 14필지 13.58%로 조사됨

〈 ‘강서구 오정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구 분	계	전	답	임야	도로	기타
필지수(개)	157	27	30	6	31	63
편면적(m ²)	85,395.6	15,711.0	13,618.0	1,462.0	21,833.1	32,771.5
구성비(%)	100.0	18.4	15.95	1.71	25.57	38.37

〈 ‘강서구 오정로’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			비고
			소계	국유지	공유지	
필지수(개)	157	50	107	93	14	
편입면적(m²)	85,395.6	33,398.9	51,996.7	40,403.5	11,593.2	
구성비(%)	100.0	39.11%	60.89%	47.31%	13.58%	

〈 강서구 오정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 〉



- 이번 확장공사 사업을 통해 오정로의 폭원이 기존 15m에서 30.5~36.5m로 확장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규모가 중로에서 대로로 변경될 계획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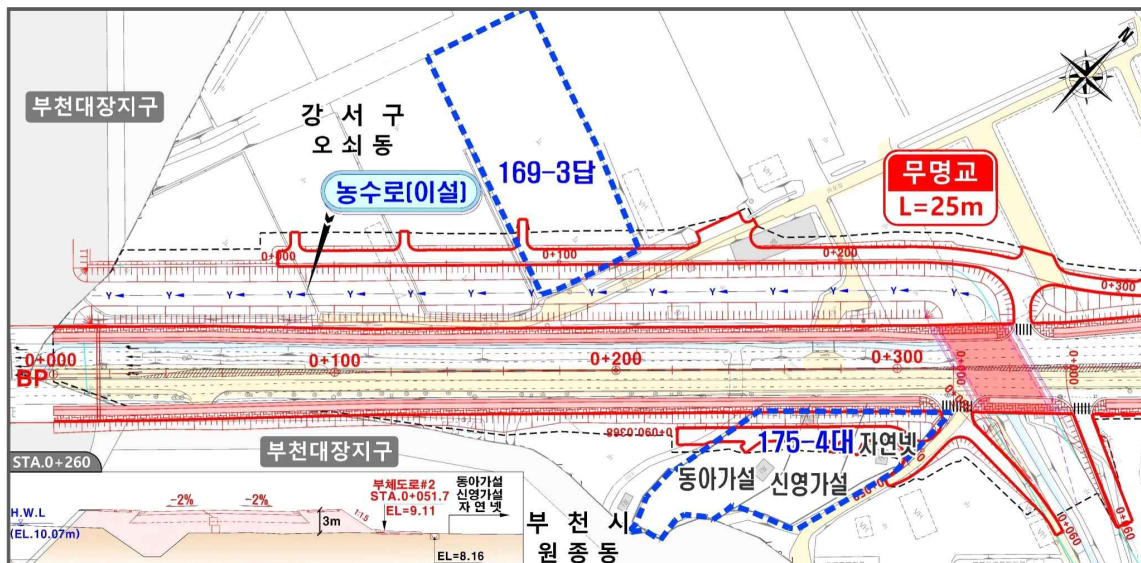
- 이번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의견을 검토해보면 아래의 3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음

① 토지 편입과 도로 접속 문제

- ‘강서구 오정로’ 확장에 따라 기존의 농로가 막다른 길이 될 우려가 있는 구간(강서구 오쇠동 169-3) 및 주변 토지와의 단차 발생 등이 우려되는 구간(강서구 오쇠동 175-4)에 대하여,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도로 사용 및 접속부에 대한 부체도로⁴⁾의 설계를 통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조치계획안을 마련함
- 기존에 설치되어 이용 중인 도로와 농수로의 위치 및 편입 계획된 주변 토지 및 관련 구조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도로 진·출입 편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부체도로 형태 및 접속부의 설계·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 강서구 오쇠동 169-3답, 175-4대 토지 위치도 〉



② 교통 서비스 등급 상향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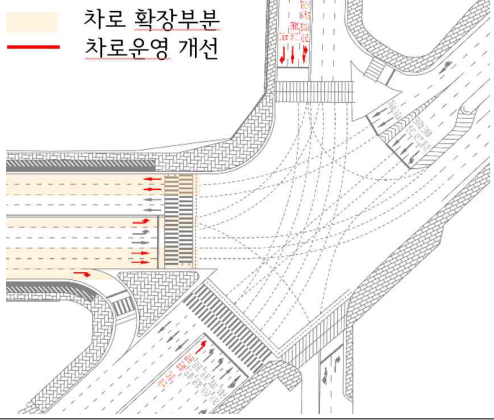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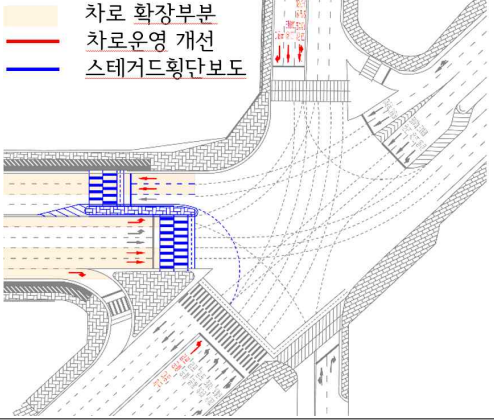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외발산사거리-메이필드사거리 간 교통성평가 서비스 등급이 당초 F에서 FF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교통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통 신호 운영 체계의 변경 및 스테거드횡단보도⁵⁾ 설치를

4) 부체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그것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건설하는 도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 대안으로 제시한 스테거드횡단보도는 예각교차로의 직진 차로에 대한 안전성 증진을 도모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해당 교차로는 5지 교차로이면서 예각 교차로로서 교통 신호 운영이 복잡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충분한 시거⁶⁾ 확보가 가능하도록 교통안전시설의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음

< 메이필드호텔 앞 스테거드 횡단보도 적용 시뮬레이션 >

구분	당초안 (교차로 개선)	보완안 (스테거드횡단보도 추가)
차로운영	 차로 확장부분 차로운영 개선	 차로 확장부분 차로운영 개선 스테거드횡단보도
교차로 지체도	109.4 초/대 (LOS F)	90.4 초/대 (LOS E, 감 19.0초/대)

③ 도로 확장에 따른 대체 녹지면적 확보

- ‘강서구 오정로’ 확장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는 일부 구역에 ‘김포 공항 대중골프장’의 개발 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조건으로 조성된

5)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22.1., p.140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행자 횡단을 위해 적용 가능한 횡단시설은 다음과 같음

- (1) **횡단보도**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2) **대각선횡단보도** : 사거리 등의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놓인 횡단보도 외에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지르도록 설치된 시설
- (3) **스테거드 횡단보도** : 2단 횡단보도라고도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 시간의 주기를 짧게 위해 도로중앙에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교통섬을 설치하여 2회에 나누어 횡단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4) **고원식 횡단보도** :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 보행로의 높이에 맞게 차도를 높여 만든 것으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

6) 시거(視距) : 운전자가 자동차 진행 방향의 전방에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제동을 걸어 정지하거나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할 수 있는 길이를 의미

대체녹지가 포함되어 도로 확장 시 대체녹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므로,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9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대체녹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9조(경미한 변경의 보고)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 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의 변경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 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부지 내에서의 건축물 구조 및 위치 변경. 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리계획 승인 당시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배하거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주민간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훼손 저감대책의 강구) ② 중앙심사 및 지방심사를 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이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훼손 저감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재해·위험 방지시설, 조경시설, 완충녹지 등의 설치 등 필요한 훼손 저감대책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의견청취안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근거한 ‘강서구 오정로’ 확장공사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변경)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량 분산 및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에 추진되는 ‘강서구 오정로’ 확장공사 사업은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며, 인근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 간 접근성 및 이동성 제고를 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이번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지역주민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도로 확장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도로와 농수로의 위치, 구조물 현황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 진·출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체도로의 형태 및 접속부의 면밀한 설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 스테거드횡단보도의 설치로 예각교차로의 직진 차로에 대한 안전성 증진 및 교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 측면은 이해가 되나, 스테거드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는 특히 교통 신호 운영이 복잡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교통시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마지막으로, ‘강서구 오정로’ 확장에 따라 대체 녹지가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대체 녹지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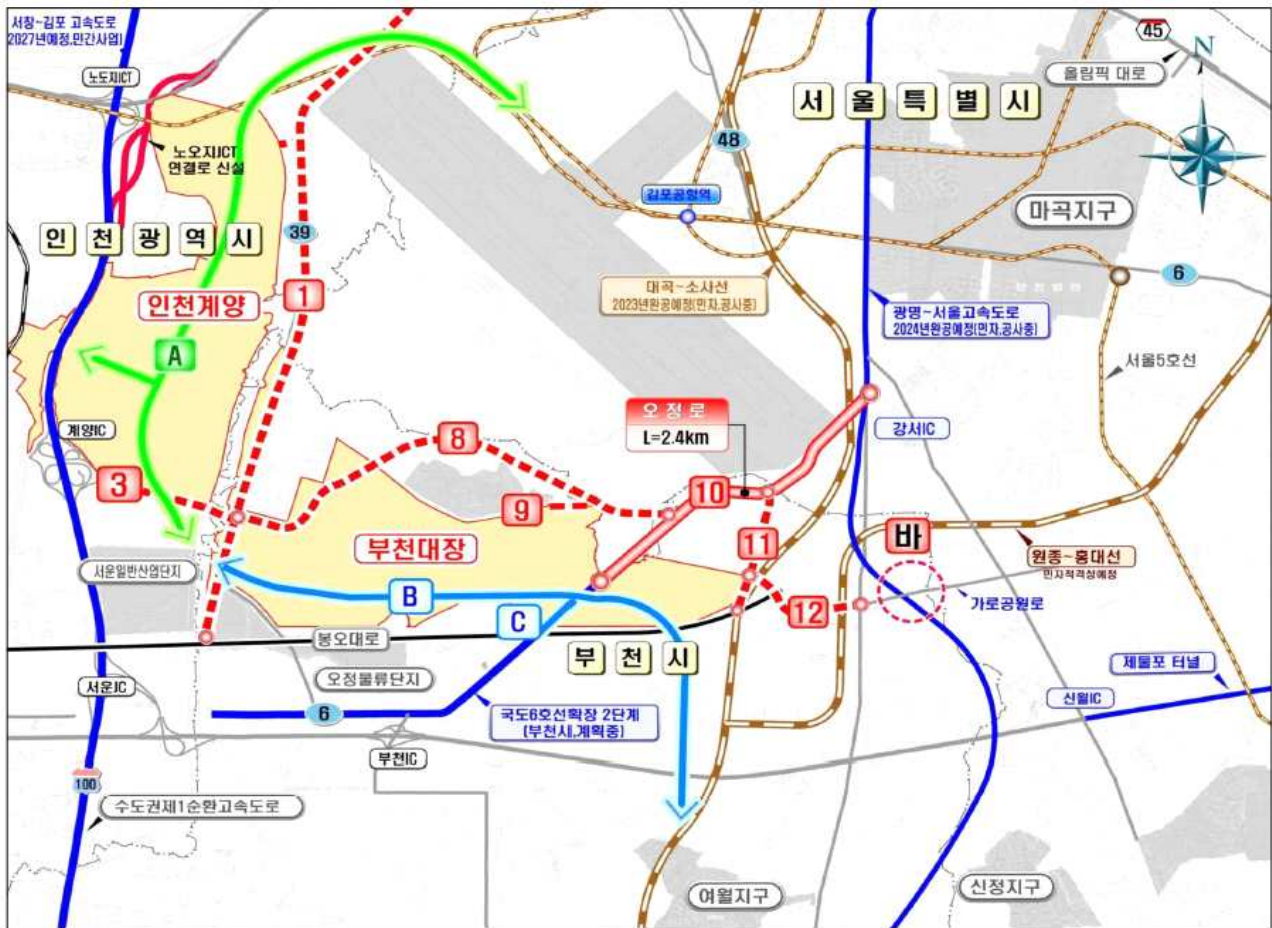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구분	사 업 명	연장(km)	차로수	시행시기	시행주체
1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	8.0	4 → 8	2026년	사업시행자
3	경명대로 확장	1.0	4~6 → 8	2026년	사업시행자
8	경명대로 신설	3.8	4~8	2026년	사업시행자
9	대장안지구 연결도로	0.2	4	2026년	사업시행자
10	오정로 확장	2.4	2,4 → 6,8	2026년	사업시행자
11	소사로 확장	0.9	2 → 4	2026년	사업시행자
12	고강IC 연결도로신설	0.9	4	2026년	사업시행자
A	S-BRT 신설 (김포공항역~박촌역~대장지구)	9.0	-	2026년	사업시행자
B	S-BRT 신설 (계양지구~대장지구~부촌종합운동장역)	8.0	-	2026년	사업시행자
C	청라~강서간 BRT 연계 (봉오대로~사업지내부)	0.6	-	2026년	사업시행자
Ba	고강IC 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가로공원길)	-	2	2026년	사업시행자

※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 상 시행시기이며, 각 사업 별로 인허가 중에 변경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강서구 오정로 -

의안 번호	1652
----------	------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	가	30.5	주간선 도로	557	오쇠동 147-7	오쇠동 180-5	일반 도로	-	-	- 하수도 중복결정 (841㎡)
기정	중로	2	338	15	집산 도로	655	외발산동 288-8	공항동 401-24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1991.7.22.)	
변경	대로	1	338	36.5	주간선 도로	968	외발산동 423-12	공항동 445-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1991.7.22.)	- 철도 중복결정 (909㎡) - 공항 중복결정 (48,269.6㎡)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대로 2-가	- 신설 - 폭원 : 30.5m - 연장 : 557m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오정로 확장공사로 인한 시설 변경
변경	중로 2-338	대로 1-338	- 선형 변경 - 폭원 변경 - 당초 : 15m - 변경 : 36.5m - 연장 변경 - 당초 : 655m - 변경 : 968m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오정로 확장공사로 인한 시설 변경

3. 입안사유

- 대상지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방화대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오정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나. 기 타 : 개발제한구역, 공항(김포공항), 철도(대곡소사선), 하수도, 도로

5. 주민 의견청취사항

가. 열 램 기 간 : 2023. 8. 31. ~ 9. 14.(14일간)

나. 계 재 신 문 : 서울경제, 서울신문

다. 열 램 장 소 : 강서구 도시계획과

라. 접 수 의 건 : 2건

제출인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안○○ (오쇠동 169-3)	○ 본인소유토지(오쇠동 169-3)와 오정로를연결 할 수 있는 고리울천 상 교량 설치 및 농로가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도로계획 변경 요청	○ 고리울천까지의 도로 확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본 도로 사용 형태 및 접속 여부 등 현황을 고려하여 부체도로를 설계하였음	미반영
권○○ 권○○ 오○○ (신영가설)	○ 오쇠동 175-4번지 공동명의 분할 사용 토지의 편입 배제 요청 ※ 지적: 3,213㎡, 편입면적: 1,070㎡	○ 도로를 확장하며 주변 토지와의 단차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진출입을 위한 부체도로를 설계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시 편입면적이 최소화되도록 검토 하겠음	미반영

6.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가. 일 시 : 2023. 09. 11.

나. 결 과 : 원안채택

7.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가. 일 시 : 2023. 11. 30.

나. 결 과 : 원안동의

8.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강서구의회	○ 외발산사거리-메이필드사거리간 교통성평가의 서비스 등급이 FF이므로,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오정로상황단보도를 ‘스테거드 횡단보도’ 형식으로 변경하고 신호운영계획을 보완, 교차로 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를 개 선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도로구역결정(변경) 과 관련하여 강서IC 교차로 일대 도로 시설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 교통개선대책’ 수립(’21.2.) 시 정합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 이후 고속도로의 강서IC 접속 계획이 변경(방화대로→오정로)되어 해당 교차로에 대한 정합성 검토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시행자 소관사항이나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부분 반영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	○ 도로 일부 구역이 ‘김포공항 대 중골프장’의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승인 조건으로 조성된 대 체녹지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대체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구 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행정사항을 시설 결정 전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관리계 획규정 제29조, 제34조)	○ 해당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시설(광역도로)에 해당하나, ○ 대체녹지 관련 ‘김포공항 대중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 공사와 별도 협의 진행 중으로 대체녹지확보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와 사전 절차를 협의하겠음	부분 반영

협의부서 (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한국공항공사	○ LH공사에서 대체녹지조성*을 완료할 경우, 오정로 확장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제척 27,500㎡) 가능 * 대체부지 인정조건으로 LH에서 (주)구성환경 폐기물 처리 후 대체녹지조성	○ 폐기물 처리 관련 기 협의중인 조건사항에 대해 협의 완료 후 관련 절차 이행하겠음	부분 반영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강서 IC RAMP 등 오정로확장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및 서서울고속도로(주)와 사전 협의 필요	○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강서 IC RAMP 등 오정로확장사업과 연계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서서울고속도로(주)와 협의하겠음	반영
	○ 광명~서울 고속도로 도로계획 (강서IC) 반영 필요	○ 강서IC 변경 전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21.2)으로 [오정로확장사업(4차선→8차선)]이 선평정되었으며, 강서IC 계획이 최대한 반영토록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9. 기타

가. 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방안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00%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4	2025	2026	2027년 이후	비고
총사업비	합 계	516	51	181	181	103	
	공사비	142	14	50	50	28	
	보상비	335	34	117	117	67	
	부대비	14	1	5	5	3	
	예비비	25	2	9	9	5	

나.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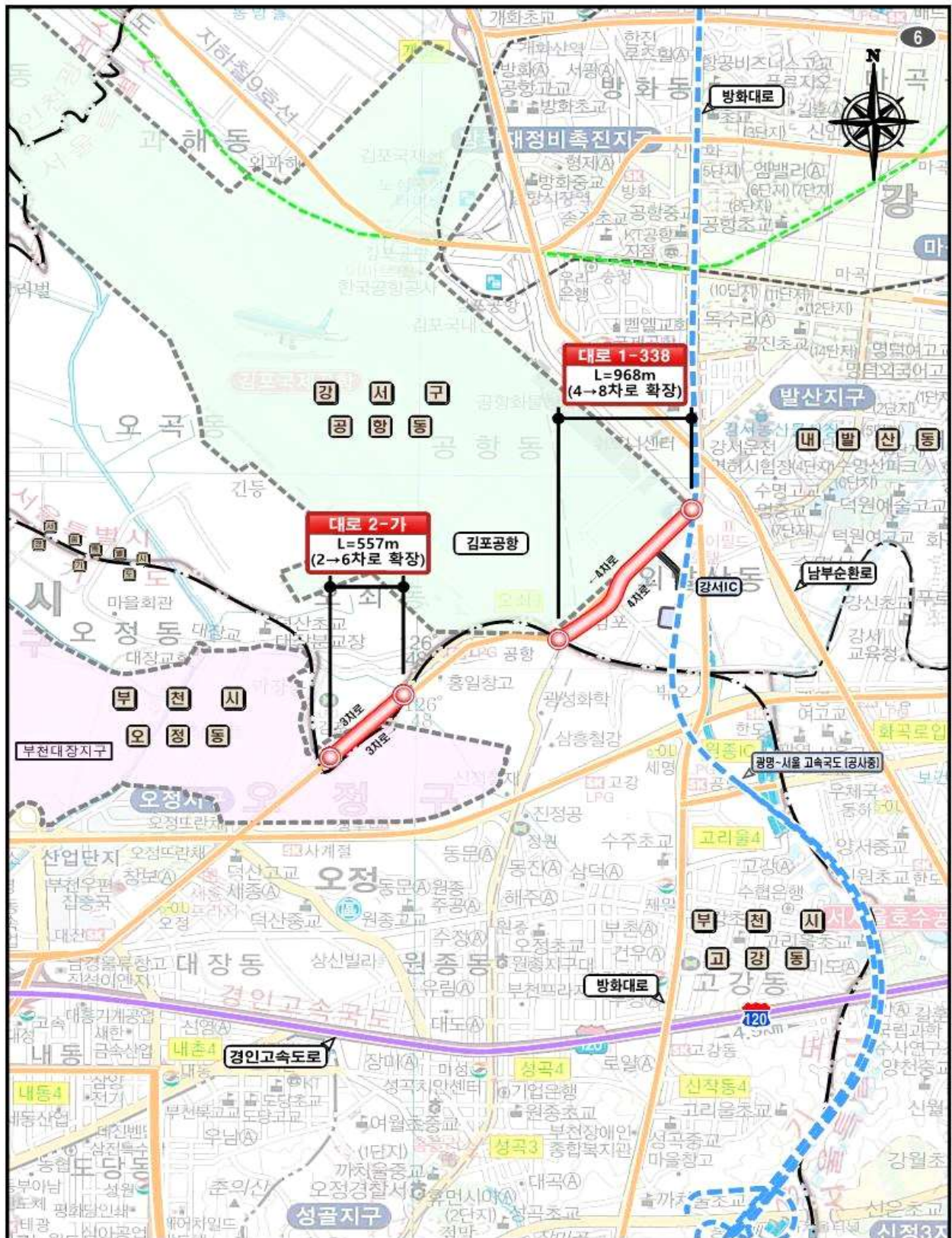
- '20. 05.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
- '21. 02. 부천대장·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21. 11.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23. 08.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
- '23. 0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요청(LH공사 → 강서구)
- '23. 08.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3. 09. 구의회 의견청취(원안채택)
- '23. 11.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박현일 (☎ 2133-8454)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안) 1부.
3.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1부. 끝.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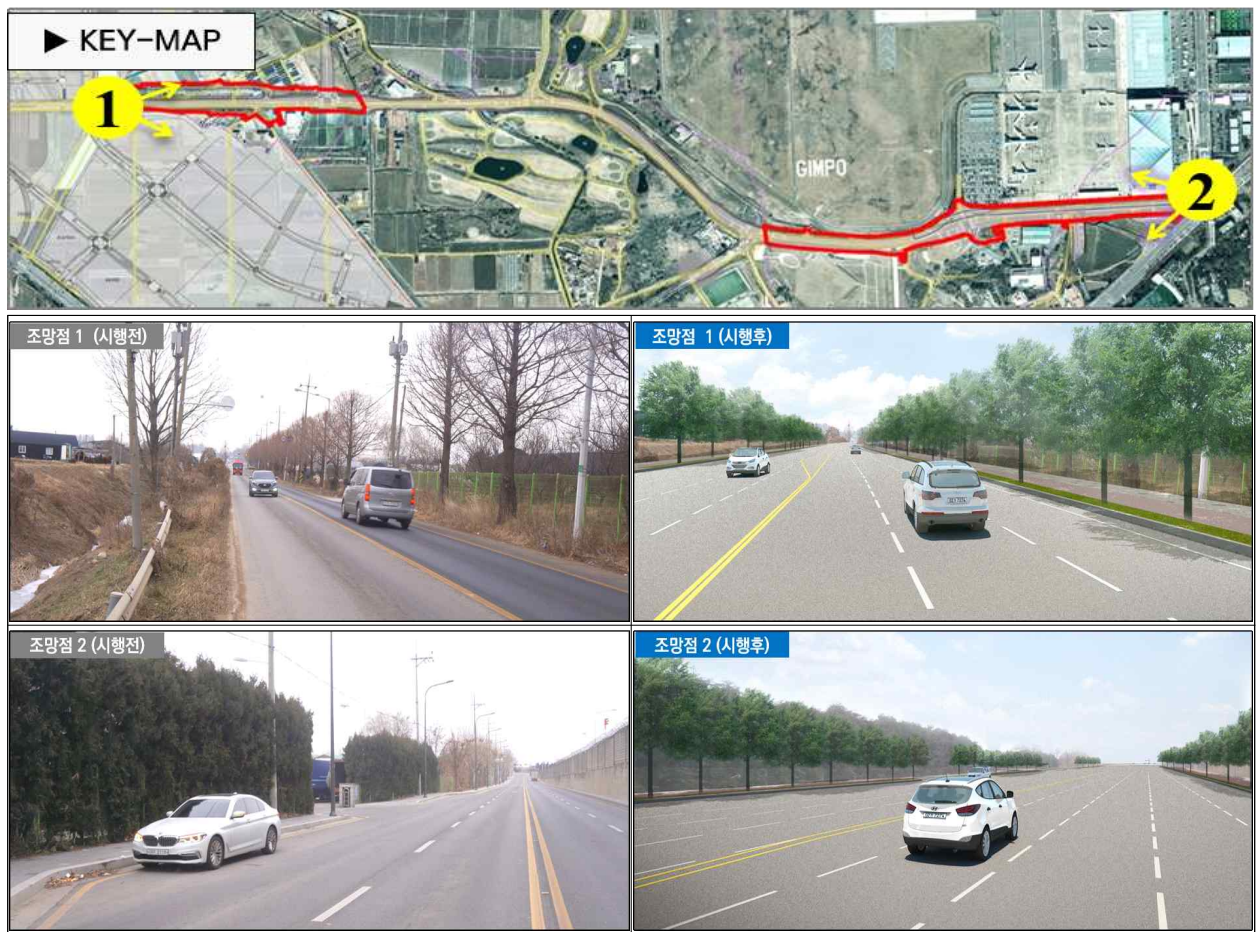
■ 위치도



■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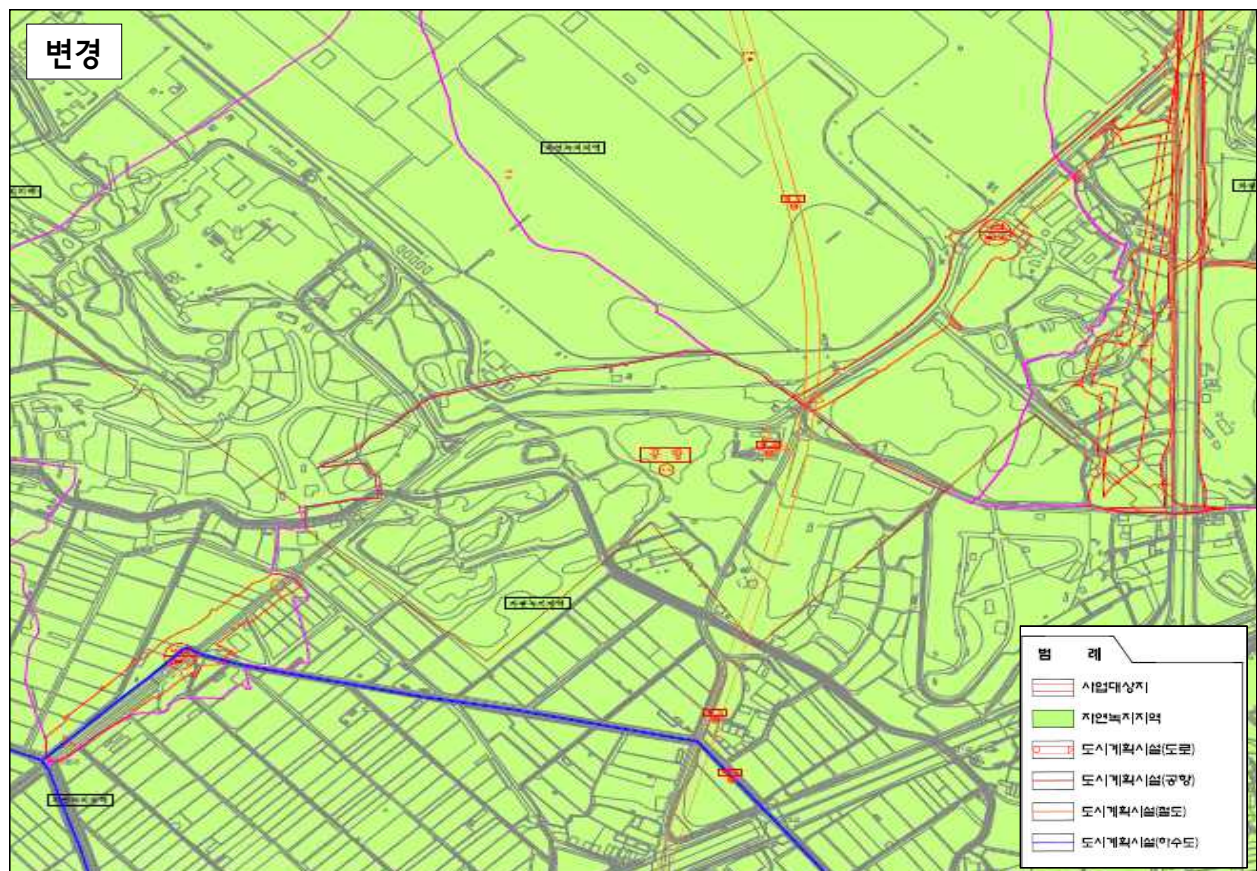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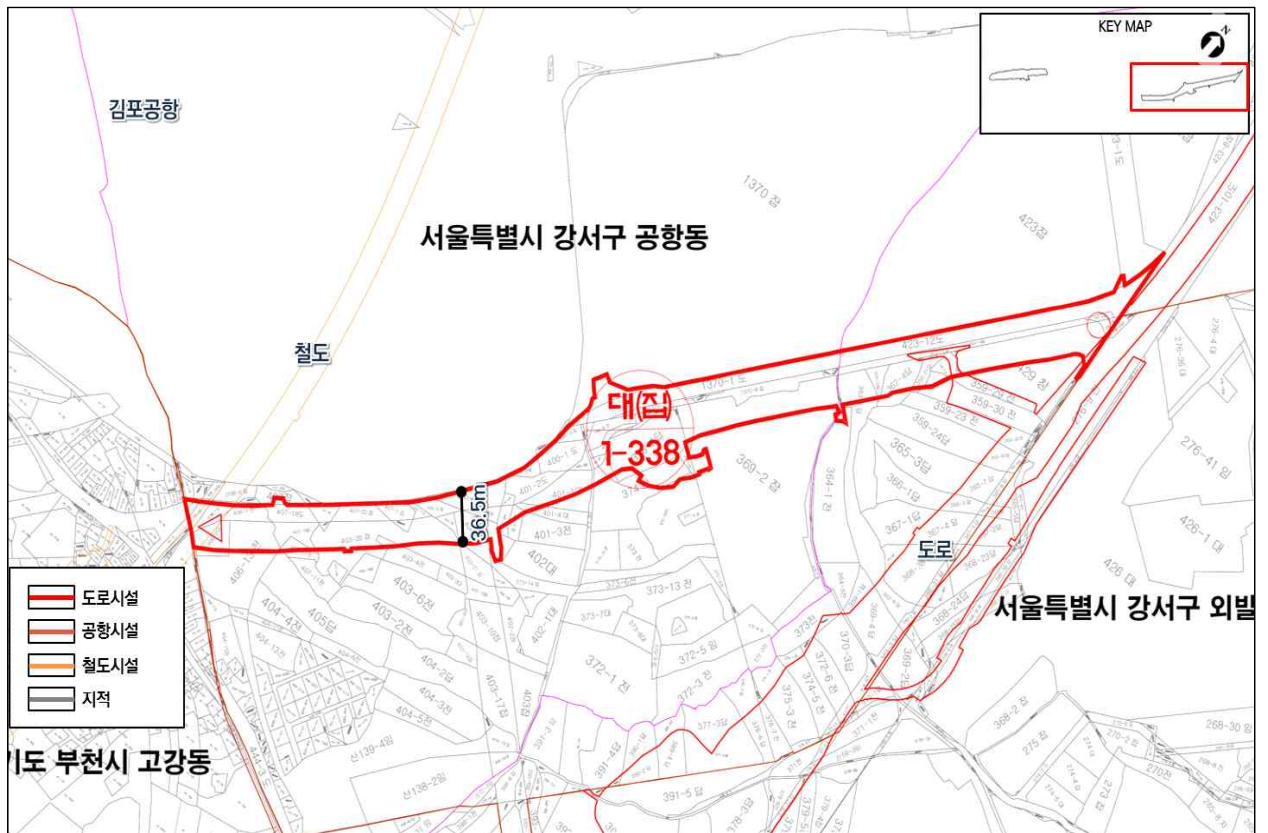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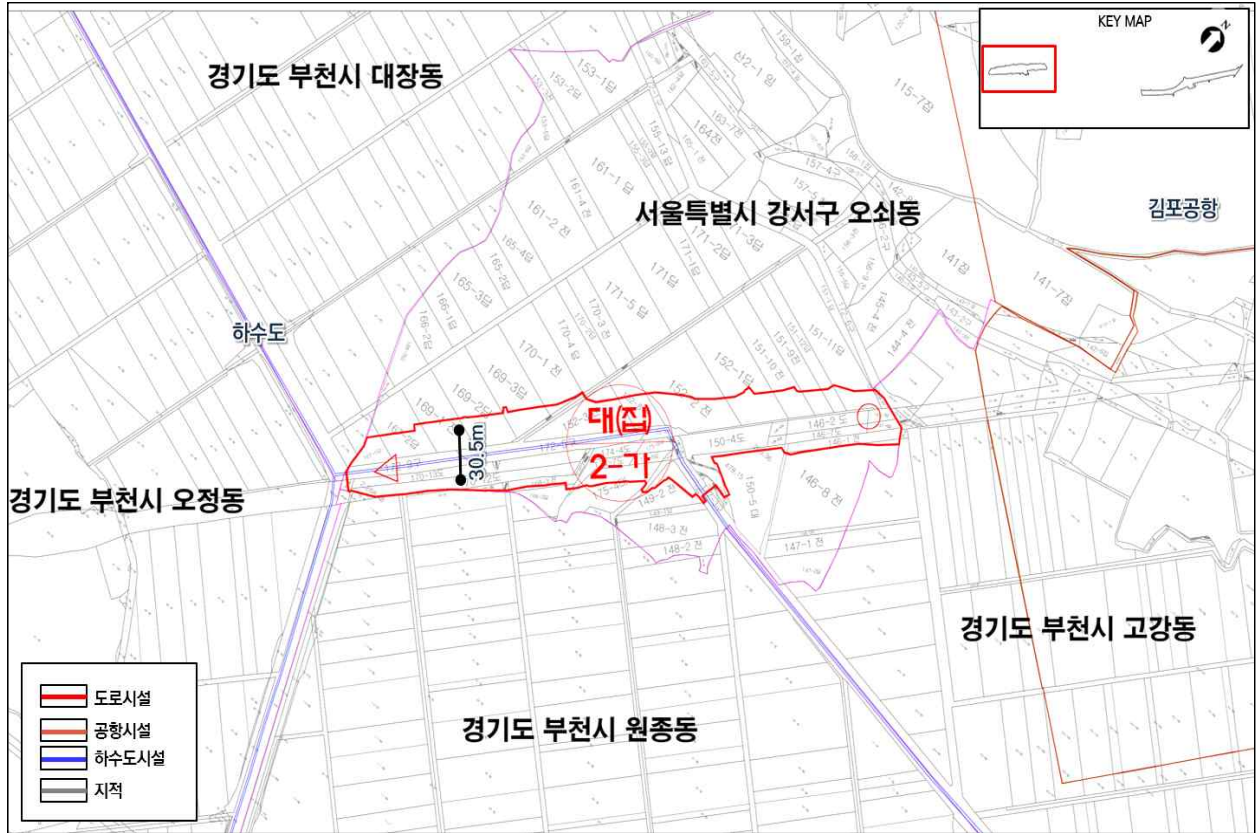
■ 현황사진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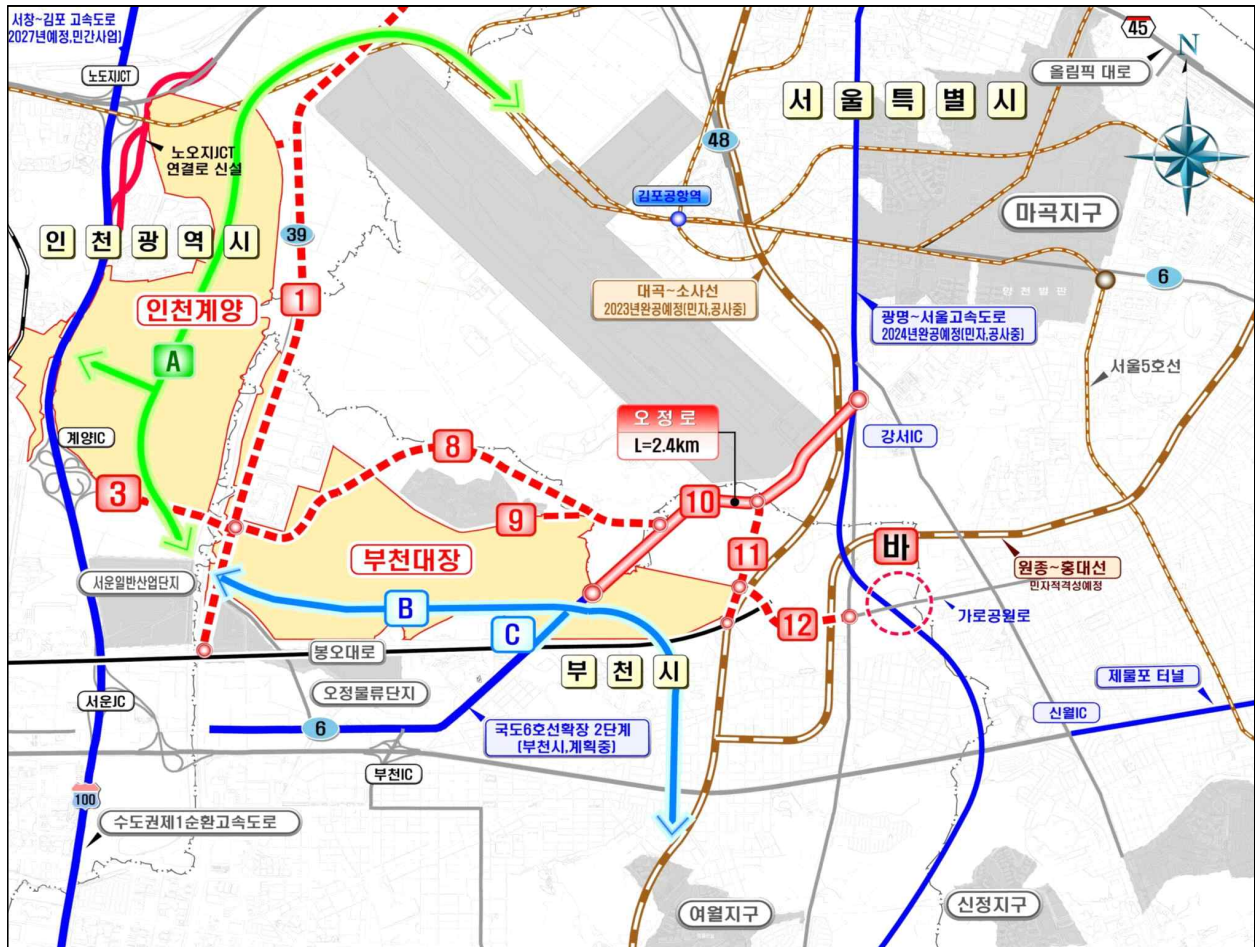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안)





[붙임3]

■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대상지 주변)



구분	사 업 명	연장(km)	차로수	시행시기	시행주체
1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	8.0	4 → 8	2026년	사업시행자
3	경명대로 확장	1.0	4~6 → 8	2026년	사업시행자
8	경명대로 신설	3.8	4~8	2026년	사업시행자
9	대장안지구 연결도로	0.2	4	2026년	사업시행자
10	오정로 확장	2.4	2,4 → 6,8	2026년	사업시행자
11	소사로 확장	0.9	2 → 4	2026년	사업시행자
12	고강IC 연결도로신설	0.9	4	2026년	사업시행자
A	S-BRT 신설 (김포공항역~박촌역~대장지구)	9.0	-	2026년	사업시행자
B	S-BRT 신설 (계양지구~대장지구~부촌종합운동장역)	8.0	-	2026년	사업시행자
C	청라~강서간 BRT 연계 (봉오대로~사업지내부)	0.6	-	2026년	사업시행자
Ba	고강IC 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가로공원길)	-	2	2026년	사업시행자

※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 상 시행시기이며, 각 사업 별로 인허가 중에 변경될 수 있음